

# NEWSLETTER 861

Aug 23, 2023

## ‘2023년 하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 안내 -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 시스템 구축 확대 등 -

2023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관세행정에 관해 안내드립니다. 하반기 제도 개선은 ① 수출입기업 지원 등을 통한 원활한 무역환경 조성 ② 납세자 등 국민의 권익보호 및 편의증진 ③ 엄정한 관세국경 관리를 통한 대외 경제질서 확립을 취지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2023년 하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I. 주요 변경사항

#### 1.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 시스템 구축 확대

- **기대효과** : 특혜관세 적용 절차 간소화, 물류·통관 시간 단축 및 해외 통관애로 방지 효과 등 수출입기업의 FTA 활용 편의 제고
- **시행일** : 베트남(한-베트남, 한-아세안 FTA)은 '23. 7. 15. 정식 개통, 한-인도네시아 CEPA 및 한-인도 CEPA는 '23년 하반기 개통 추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input type="checkbox"/>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 시스템* 구축 (2개 국가, 3개 협정) * 원산지증명 정보가 관세당국간 전자 교환되는 경우 특혜관세 적용 신청 시 원산지증명서 원본 제출 원칙적 생략  • 중국 - 한-중 FTA('16.12) -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16.12)  • 인도네시아 - 한-아세안 FTA('20.3) - <신 설>  • <신 설>  • <신 설>	<input type="checkbox"/>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 시스템 구축 <b>확대</b> (4개 국가, 7개 협정)  • 중국 <현행과 같음>  • 인도네시아 - <현행과 같음> - <u>한-인도네시아 CEPA</u> ('23년下 정)  • 베트남 - <u>한-아세안 FTA('23.7.15.)</u> - <u>한-베트남 FTA('23.7.15.)</u>  • 인도 - <u>한-인도 CEPA('23년下 예정)</u>

#### 2. 원산지 간편인정 품목으로 우수 재활용 제품 지정

- **기대효과** : 재활용 물품 제조기업의 원산지 증빙 절차를 간소화하여 FTA를 활용한 수출 경쟁력 제고 지원
- **시행일** : '23. 3분기 시행 예정(「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포괄)확인서 고시」개정)

종 전	달라지는 내용
<p>□ 원산지 간편인정* 서류 및 품목</p> <p>* 관세청장이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법령에 근거한 인증서·등록증·확인서 등을 원산지(포괄)확인서로 인정하는 제도</p> <p>• 관세청장이 원산지(포괄)확인서로 인정하는 서류</p> <p>-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물김 구매확인서’ 등 18종</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p>• 적용 대상 품목 (총 1,200개 품목)</p> <p>- 농산물: 1,028개 품목</p> <p>- 수산물: 81개 품목</p> <p>- 축산물: 5개 품목</p> <p>- 식품류: 39개 품목</p> <p>- 지역특산물: 47개 품목</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p>□ 원산지 간편인정 서류 및 품목 <b>확대</b></p> <p>• 관세청장이 원산지(포괄)확인서로 인정하는 서류 <b>확대</b></p> <p>- 〈현행과 같음〉</p> <p>- <b>‘우수재활용제품 인증서’</b></p> <p>• 적용 대상 품목 <b>확대</b> (총 1,225개 품목)</p> <p style="text-align: center;">〈현행과 같음〉</p> <p>- <b>우수 재활용제품: 25개 품목*</b></p> <p>* 재활용 가루 세탁비누, 정제연료유, 재활용 트레이드 타이어 등</p>

### 3. 파나마 해상 환적 미국산 물품의 직접운송 인정 기준 마련

- 기대효과 : 파나마에서 해상 환적되는 미국산 액체화물(원유·가스)의 직접운송 인정 기준 마련으로 기업 FTA 활용 편의 개선
- 시행일 : '23. 7. 19. 시행(「파나마 해상 환적 물품 한-미 FTA 적용 시 직접운송 입증 방법」지침 시행)

종 전	달라지는 내용
<p>□ 비당사국 경유환적되는 물품의 한-미 FTA 직접운송 요건 (한-미 FTA 협정문 제6.13조)</p> <p>• 허용된 공정* 이외의 공정 미수행</p> <p>* 하역·재선적, 양호한 상태로의 상품 유지, 운송에 필요한 공정</p> <p>• 비당사국 세관 당국의 통제</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p>□ 비당사국 경유환적되는 물품의 한-미 FTA 직접운송 요건 (한-미 FTA 협정문 제6.13조)</p> <p>• 〈현행과 같음〉</p> <p>• 〈현행과 같음〉</p> <p>□ 파나마에서 해상 환적 시 한-미 FTA 직접운송 증빙서류</p> <p>• <b>전체 운송경로*</b> 확인 서류(선하증권 등)</p> <p>* 미국 → 파나마, 파나마 → 한국</p> <p>• 파나마 항만청에서 발급한 <b>‘해상 환적 작업 감독 확인서’</b></p> <p>* STS Operations Supervision Report</p>

### 4. 전자상거래물품 관련 통관우대업체 신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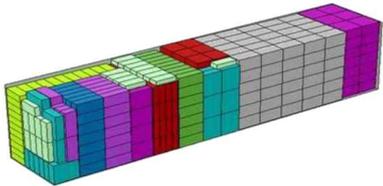
- 기대효과 : 전자상거래물품의 신속통관 지원으로 통관적체 해소 및 해외직구 소비자 편의 증진
- 시행일 : '23. 7. 1. 시행(「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에 관한 고시」 전부 개정)

종 전	달라지는 내용
<신 설>	<input type="checkbox"/> <b>통관우대업체 정의</b> 신설 • 전자상거래업체 중 일정 요건에 따라 통관우대업체로 신청하여 등록증을 교부받은 자
<신 설>	<input type="checkbox"/> <b>통관우대업체 신청요건</b> 신설 • 전자상거래업체가 <b>통관우대업체로 신청</b> 하기 위한 <b>필수요건*</b> 등 규정 * 전자상거래업체 고유부호 신청, 사이버몰 직접 운영, 거래정보 전송 등
<신 설>	<input type="checkbox"/> <b>통관우대 절차</b> 신설 • 통관우대 대상물품*에 대하여 <b>스마트통관**</b> 적용 가능 * 통관우대업체를 통해 수입되는 전자상거래물품 중 우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물품 ** 수입신고내역이 통관시스템에 접수된 후 일정시간이 경과하면 전자적 방식에 의해 자동으로 심사 처리

### 5. Master B/L 단위 보세운송 신고 시행

○ 기대효과 : 물류 절차 간소화 및 비용 절감으로 물류 경쟁력 강화

〈 보세운송 신고 방법 전후 비교(예시) 〉

	<p>[기존] Master B/L(1개) + House B/L(2,000개) 모두 신고</p> <p>[개선] Master B/L(1개)만 신고</p>
<p>* 컨테이너(1대) = Master B/L(1개) + House B/L(2,000개)</p>	

○ 시행일 : '23. 7. 18. 시행(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개선)

종 전	달라지는 내용
<input type="checkbox"/> House B/L 발행 화물의 보세운송 신고 방법  • ‘Master B/L’과 ‘House B/L’ 모두 신고	<input type="checkbox"/> House B/L 발행 화물의 <b>보세운송 신고 방법 간소화</b>  • <b>Master B/L만 신고 가능</b> - 해상 소량화물(LCL) 중 컨테이너에서 적출하지 아니한 상태로 컨테이너 야적장(CY)에서 다른보세구역 등으로 보세운송하는 경우*에 한함 * 관세법 제213조제1항 참조

## 6. 여행자 휴대품 모바일 신고·납부 서비스 시행

- 기대효과 : 성실신고 여행자의 입국 및 납세 편의 제고
- 시행일 : '23. 8. 1. 시행

종 전	달라지는 내용
<input type="checkbox"/> 모바일 신고 세관 • 2개 공항 - 공항 : 인천(T2)·김포	<input type="checkbox"/> 모바일 신고 세관 확대 • 전국 15개 공항만 - 공항 : 인천(T1·T2)·김포·김해·제주·청주·대구·무안·양양 - 항만 : 인천·부산·군산·평택·속초·동해·제주
<input type="checkbox"/> 모바일 신고 세금 납부 방법 • 세관검사 후 납부고지서(종이)로 세금 납부	<input type="checkbox"/> 세금 납부 방법 간소화 • 세관검사 생략 가능 및 모바일(앱)로 전자납부고지서를 전송받아 세금 납부 ※ FTA 세율 적용·외국환신고·검역대상 등은 제외

## 7. 수입물품 6단위 품목분류 사전심사 도입

- 기대효과 : 용도세율 적용 등 6단위 심사가 필요한 수입업체\* 등의 개선 요구를 반영
- \* (예시) 6단위 사전심사 회신 후, 실제 사용 여부에 따라 용도세율 세번으로 신고 가능

8414.10	진공펌프	6단위 회신
8414.10-9010	- 반도체 제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종류의 것	실제 사용에 따라 세번 신고
8414.10-9020	-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종류의 것	
8414.10-9090	- 기타	

- 시행일 : '23. 7. 14. 시행(「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서식 개정)

종 전	달라지는 내용
<input type="checkbox"/> 품목분류 사전심사 범위 • 수입물품 10단위 심사 가능 - 처리기한 30일  • 수출물품 6단위, 10단위 심사 가능 - 6단위 심사 처리기한 15일, 10단위 심사 처리기한 30일	<input type="checkbox"/> 수입물품에 대해서도 6단위 사전심사 도입 • 수입물품 <b>6단위</b> , 10단위 심사 가능 - 6단위, 10단위 심사 모두 처리기한 30일  • 〈 현행과 같음 〉

## 8. 기업 사후관리 의무 부담 완화를 위한 사후관리 제도개선

- 기대효과 : 기업 사후관리 의무 부담 경감
- 시행일 : '23. 7. 11. 시행(「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

종 전	달라지는 내용
<input type="checkbox"/> 반도체제조용 초순수 공급장치 사후관리 대상물품 지정·운영	<input type="checkbox"/> 반도체 제조용 초순수 공급장치 <b>사후관리 생략물품 지정·운영</b> ○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 (별표1의 가 → 별표1의 나)
<input type="checkbox"/> 자율사후관리(AEO) 업체가 수입한 물품에 대해 최대 3년간 사후관리	<input type="checkbox"/> 자율사후관리(AEO) 업체가 수입한 부분품, 원재료에 대해 <b>1년 이내</b> 기간동안 <b>사후관리</b> 하도록 기간 단축 ○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제24조)

### 9.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 제출기간 연장

- 기대효과 : 과태료 부과에 대한 충분한 소명기간을 부여함으로써 국민권익 보호
- 시행일 : '23. 10. 1. 시행 예정(「관세법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훈령」 제9조 개정)

종 전	달라지는 내용
<input type="checkbox"/> 과태료 부과예정 통지에 대한 의견 제출기간 • 통지일부터 <b>15일</b> 이내 제출	<input type="checkbox"/> <b>의견 제출기간 연장</b> • 통지일부터 <b>20일</b> 이내 제출

### 10. 특송물품 과세운임표 개편

- 기대효과 : 과세운임표 적용기준 명확화 등을 통해 납세자 신고 편의 개선
- 시행일 : '23. 9. 1. 시행(「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제24조 개정)

종 전	달라지는 내용								
<input type="checkbox"/> 특송물품 과세운임표* * 특송물품 중 운임을 알 수 없는 경우에 적용되는 지역·중량별 과세운임 기준표  • (적용기준) 특송물품 중 <u>운임을 알 수 없는 경우</u>  • (과세운임표) 대상지역을 <b>4개 지역</b> 으로 구분  < 대상지역 구분 >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40px;"> <tr> <td>1지역</td> <td>2지역</td> <td>3지역</td> <td>4지역</td> </tr> <tr> <td>중국, 일본 등</td> <td>태국, 베트남 등</td> <td>미국, 호주 등</td> <td>이집트, 페루 등</td> </tr> </table>	1지역	2지역	3지역	4지역	중국, 일본 등	태국, 베트남 등	미국, 호주 등	이집트, 페루 등	<input type="checkbox"/> 과세운임표 <b>적용기준을 명확화하고 과세운임표 조정</b>  • (적용기준) 특송물품 중 <b>수입신고 시에 운임명세서 등에 따라 과세 운임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b>  • (과세운임표) 대상지역을 <b>주요국가 20개* + 그 외 4개지역으로 세분화하여 운임표 조정</b>  * 호주, 브라질, 캐나다, 중국, 프랑스, 독일, 홍콩, 인도네시아, 일본,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필리핀, 러시아, 싱가포르, 스페인, 대만, 태국, 영국, 미국, 베트남
1지역	2지역	3지역	4지역						
중국, 일본 등	태국, 베트남 등	미국, 호주 등	이집트, 페루 등						

### 11. 환전 고객 편의 제고를 위한 환전업 제도개선

- 기대효과 : 외국어 표기 등록증, 영업정지 표지 등 서식 신설 및 식별 용이한 곳에 게시하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환전 고객의 편의 제고 및 피해 예방
- 시행일 : '23. 8월 시행 예정(「환전영업자 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

종 전	달라지는 내용
<input type="checkbox"/> 환전업등록증(한국어 서식만 운용)  • 한국어로만 표기된 환전영업자 등록증 서식 운용          <신 설>	<input type="checkbox"/> <b>환전업등록증</b> (한국어 서식만 운용) • <b>외국인 환전 고객</b> 을 위해 <b>외국어</b> (영어, 중국어, 일본어) 표기 환전영업자 <b>등록증</b> 을 <b>신설</b> 하고, 등록증을 고객이 '식별이 용이한 곳'에 게시  <input type="checkbox"/> 영업정지 처분 안내문 • <b>영업정지 안내문</b> 을 <b>신설</b> 하고, 관할 <b>세관장</b> 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환전영업자의 <b>영업장에 영업정지 표지</b> 를 <b>부착</b> 하도록 규정.

## 12. 수출입신고대상 우편물 추가

○ 기대효과 : 유해물품 통관심사 강화를 통한 국민건강 보호

○ 시행일 : '23. 7. 1. 시행\*

\* 다만, 전자상거래 우편물은 '24. 6. 30.까지 수입신고 유예(「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에 관한 고시」 개정)

종 전	달라지는 내용
<input type="checkbox"/> 수출입신고대상 우편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수출입 제한 또는 금지물품</li><li>세관장 확인 필요 물품</li><li>판매목적 물품 또는 대가지급 물품</li><li>가공무역목적 무상 수출입물품</li><li>관세청장이 정하는 금액 초과물품</li></ul> <a href="#">〈 추가 〉</a>	<input type="checkbox"/> 수출입신고대상 우편물  〈 현행과 같음 〉  <a href="#">• 건강기능식품·의약품</a>

## | 첨부자료 (아래 파일명을 클릭하면 해당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붙임1] 2023년 하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

[붙임2] 2023년 하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카드뉴스]

## I Contact



황혜준 관세사

T 070-4353-1597

E hjhwang2@esein.co.kr



조민지 관세사

T 02-6011-3098

E mjcho@esein.co.kr



| 세인 홈페이지 | Newsletter 더보기 | 구독신청 |

세관세법인의 뉴스레터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으로 공식적인 견해나 법률의견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세관관세법인의 홈페이지 또는 위의 컨설턴트에게 연락하시어 확인 바랍니다.

The newsletter of SEIN Customs & Auditing Corp. is published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general information and does not include any official views or legal opinions. For more details, please check our website or contact the consultants mentioned above.

Copyright 2023 SEIN Customs & Auditing corp. All rights reserved.